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50호 2024. 2. 7.(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849호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9
거창군 조례 제2850호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1
거창군 조례 제2851호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39
거창군 조례 제2852호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44
거창군 조례 제2853호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0
거창군 조례 제2854호	거창군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54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89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2
거창군 규칙 제1390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7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1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48호선, 공공청사:거창지원, 거창지청) 사업실시계획 인가(변경) 71	
거창군 고시 제2024-16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8
거창군 고시 제2024-17호	가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79
거창군 고시 제2024-18호	거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81
거창군 고시 제2024-1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83
거창군 고시 제2024-20호	도로명주소 고시	84

공 고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1호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5
거창군 공고 제2024-193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97
거창군 공고 제2024-196호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의견청취 공고	110
거창군 공고 제2024-230호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6
거창군 공고 제2024-245호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4차 공고	126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3조(「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4조(「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5조(「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 자녀”를 “둘”로 한다.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감경률 100분의 50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24세 이하 자녀

제7조(「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

제8조(「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제9조(「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감면율 100분의 100 감면대상 중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셋째자녀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1명/1과목)”를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세 이하인 가구(1명/1과목)”로 한다.

제10조(「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2조(「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 7세 이하”를 “7세 이하”로 한다.

제13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건설근로자(이하 “지역건설근로자”라 한다)의 고용,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지역건설기계”라 한다)와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라 한다)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

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4-8
----------	--------

제출 연월일	2024. 1. 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다자녀 기준완화, 만 나이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사항 등을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부시책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자녀 기준완화(안 제1조~제9조)

- 1) 세 자녀 이상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 2) 18세, 19세, 24세, 25세 자녀 기준 ⇒ 24세 자녀로 통일
 - (가) 24세 근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 (나) 의미: 학령기와 사회 적응을 위한 완충기를 포함한 나이

나. 만 나이 표현 정비(안 제9조~제12조)

- 1) 나이 표현에서 “만” 삭제
- 2) 근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다. 행정안전부 권고 공유재산법령 불부합 정비(안 제13조)

- 1)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기산일: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를 받은 날
- 2) 근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경쟁제한 규정 정비(안 제14조)

- 1) 지역건설 자재·기계·근로자의 “우선” 사용·고용 규정에서 “우선” 삭제
- 2) “관급자재로 공급”과 유사한 의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12.~2024. 1.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849호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민과 거창군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

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제5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거창군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2월 5일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는 법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장 위원회와 위원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총무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제1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

제14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0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다.

제21조(위원의 선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6조(공청회 및 토론회) 의회는 안전심사 및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27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

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29조(군정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31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7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 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0조 규정 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그 밖에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의사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

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②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③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를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별지 서식]

군정질문요지서

제〇〇회 거창군의회 제〇차 본회의(년 월 일)

질문의원	(서명)		
출석대상 공 무 원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u><질문내용></u>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2
----------	--------

발의일자	2024. 1. 9.
발 의 자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의원의 활동원칙 등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다. 위원회와 위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제26조)

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7조~제32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

1)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바. 다른 조례의 개정

1)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거창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3)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제53조·제54조·제56조·제64조·제71조·제7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2.~1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850호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 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대표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

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한 경우

⑥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⑦ 청구인 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청구인명부 연대 서명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거창군청 및 각 읍·면별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의회 누리집,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

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거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이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명” 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직인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의견제시 요청내용			

위와 같이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및 의견제시 요청 세부내용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 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의견제시 요청내용” 에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합니다.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4	발의일자	2024. 1. 9.
		발 의 자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 나.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안 제3조)
- 다. 주민조례청구서 등 각종 서식 (안 제4조·제5조·제8조·제11조)
- 라.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 방법(안 제6조·제7조)
- 마. 청구인 명부의 보정 절차 및 기간(안 제9조)
- 바.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안 제10조)
- 사.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안 제11조)
- 아. 주민조례 입안 지원(안 제12조)
- 자. 청구권 확인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수 협조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2. 22.~12. 27.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851호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지원표시”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제4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기준)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표지판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현장에 설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이 경우 해마다 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6조(지원표시의 설치기준) 지원표시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등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 등의 설치에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3
----------	--------

발의일자	2024. 1. 9.
발 의 자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거창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표시를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안 제4조)
- 라. 표지판의 설치기준(안 제5조)
- 마. 지원표시의 설치기준(안 제6조)
- 바. 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안 제7조)
- 사. 철거(안 제8조)
- 아. 비용부담(안 제9조)
- 자. 관리 감독 및 평가(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기본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2. 26.~1. 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852호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거창군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 아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입양일	현재 장애상태	
신청내용	신청금액	원	지급 내역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5
----------	--------

발의일자	2024. 1. 9.
발 의 자	신미정,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1. 제안 이유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 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사. 대장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2. 22.~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853호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할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군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
- 나. 관련 조문: 방연물품의 비치 등, 지원(안 제3조·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합계
군비	30	30	30	30	30	150

3. 관련 의견

- 가. 비치 권장 시설 대상을 매년 선정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조례에 인증된 방연물품을 순차적으로 지원
- 나. 기관 증·감, 방연물품 인증기준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시책 추진으로 화재피해 예방 지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지원대상: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가. (공공기관) 군청, 읍·면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등
- 나.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11, 병원 3, 요양병원 3 등
- 다. (어린이집) 국공립 7, 민간 15, 가정 5 등
- 라.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8 등

2.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150백만원)

- 가. 방연물품 25,000원 × 1,200개 = 연 30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강 광 석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6	발의일자	2024. 1. 9.
		발 의 자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방연물품의 비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교육 및 홍보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 2.~1.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조례 제2854호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거창군 소재(이하 “군”이라 한다)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귀농귀촌단지로의 진입도로, 귀농귀촌단지 내 도로·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상수관로·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 “입주예정자”란 귀농귀촌단지에 입주할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
 - 나.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충족 가능한 사람
4. “입주예정자대표”란 입주예정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제3조에따

른 지원사업의 신청주체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 단지 구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호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요건)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주예정자 명의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전체 확보. 다만,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할 것
3. 지원 사업계획 승인부터 귀농귀촌단지 건축 사용승인 완료까지 입주예정자 명의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인정한다.
 - 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준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지원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확인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수도
 - 필요 용수량,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4. 하수도
 - 오수처리 용량,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5. 우수
 - 우수처리 방법 및 관로 등 설치계획
6.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7. 전기통신
 - 전기인입계획,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8. 주택계획
 -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9.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 소음·먼지 등 공사 중 대책, 오폐수 등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IV. 세부추진계획

1. 사업비의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2. 사업의 예정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3.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4. 기존 마을과의 조화 방안
 - 공동체 형성 및 교류 계획, 기존마을을 시설 계획 등
5. 사업성공을 위한 제안
 - 사업추진 지연방지계획,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6. 그 밖의 사항
 -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 위치도
 -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10킬로미터 반원 표시)
 - 사업예정지 현장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사업부지명세서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적 (제곱미터)	소유자	용 도	그 밖의 사항
합 계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설치비용 지원

나. 관련 조문: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체

1) 기반조성 설치비용 지원세대수: 귀농귀촌인 수의 1퍼센트

2) 5년 평균 귀농귀촌인수 1,459명의 1퍼센트: 15호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100	300	300	300	300	1,300

1) 1년 평균 지원기준: 5호, 호당 최대 20백만원

2) 1차연도 추경 편성으로 5호, 100백만원 편성

3) 귀농귀촌인의 증감 및 사업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4년 추경)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5호 × 20백만원 = 100백만원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곽철식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7
----------	--------

발의일자	2024. 1. 9.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이유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행복농촌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12. 22.~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규칙 제1389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다자녀 지원란과 전입지원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다자녀 지원	<u>두 자녀</u> <u>세 자녀</u>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u>두 자녀</u>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대상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
전입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	전입신고 시 한 번, <u>800리터(10리터·20리터 종량제봉투에 한정한다)</u> 이내. 다만,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명 전입 시 400리터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다자녀 지원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별표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나. 2024년 예산 200만원 = 1명 × 50만원 × 4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4-8
----------	--------

제출일자	2024. 1. 23.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 1) (현행) 세 자녀 이상 세대
- 2) (변경) 두 자녀 이상 세대

나. 전입세대에 지원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크기 다양화함(안 별표)

- 1) 20리터 40장 이내 ⇒ 800리터(10리터·20리터 종량제봉투에 한정)
이내

다. 다자녀 기준완화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9조
-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조·제3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200백만원 확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 3.~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2월 7일

거창군 규칙 제1390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 100천원”을 “연 360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 200천원”을 “연 600천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서점”을 “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 금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u>연 100천원</u></p> <p>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u>연 200천원</u></p>	<p>제3조(지원 금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u>연 360천원</u></p> <p>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u>연 600천원</u></p>
<p>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서실 나. 직업기술분야 학원 다.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p> <p>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u>서점</u></p> <p>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p>	<p>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서실 나. 직업기술분야 학원 다.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p> <p>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u>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u></p> <p>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p>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나. 관련 조문: 지원 금액(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군비	1,750,000	1,720,000	1,690,000	1,660,000	1,630,000

3. 관련의견

가.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청소년 역량강화와 전입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4년도)

1. 바우처 지원 사업비: 1,729,560천원

가. 13세~15세: 556,560천원(360천원×1,546명)

나. 16세~18세: 1,173,000천원(600천원×1,955명)

2. 시스템 용역, 홍보비 등 운영비: 20,440천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4-9
----------	--------

제출일자	2024. 1. 23.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 및 가맹점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액 증액함(안 제3조)

-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00천원 ⇒ 연 360천원
-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0천원 ⇒ 연 600천원

나.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함(안 제7조)

- 1)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9조
- 2)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3조·제6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1,750백만원 반영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 5.~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48호선, 공공청사:거창지원, 거창지청)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6-26호(2016.3.3.)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 2-48호선)과 경상남도 고시 제2016-73호(2016.3.3.)로 최종 결정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 거창지원, 거창지청)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024. 2. 1.

거 창 군 수

1. 변경 개요 : 토지소유권 변동 및 착수 예정일 지정
2. 사업개요(변경없음)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거창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거창	가지, 상림	계					46,256				
				중로	2	48	200	15	3,392	거창읍 가지리 1345-62	거창읍 상림리 411-4	'16.3.3. 거창군고시 2016-26호	
				공공청사(거창지청)						22,593	거창읍 가지리 1354-27	거창읍 상림리 702-8	'16.3.3. 경남고시 2016-73호
				공공청사(거창지원)						20,271	거창읍 가지리 1345-52	거창읍 상림리 410-1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착수일 지정)

- 착수 예정일 : 2023. 8. 28.
- 준공 예정일 : 2025. 8. 27.(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소유권 변동사항 기재)

- 도로(중로2-4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	3,798	3,392	-	-	-	-	-
1	거창읍 가지리	1345-62	전	3	3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45-39	전	245	128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45-54	전	72	72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53	전	73	73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45-51	전	591	591	-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1354-28	임	288	288	-	거창군			
7	거창읍 상림리	410-15	전	936	936	-	거창군			
8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	거창군			
9	거창읍 상림리	410-18	전	819	819	-	거창군			
10	거창읍 상림리	410-10	전	15	15	-	거창군			
11	거창읍 상림리	410-21	전	7	7	-	거창군			
12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	거창군			
13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	거창군			

○ 공공청사(거창지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	13,430	10,986	-	-	-	-	-
소계	-	-	-	13,430	10,986	-	-	-	-	-
1	거창읍 가지리	1345-52	전	332	332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45-55	전	10	10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45-61	전	72	72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40	전	79	79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54-25	임	224	224	-	거창군			
6-1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x1/2	-	거창군			
6-2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x1/2	-	거창군			
7-1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x1/2	-	거창군			
7-2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x1/2	-	거창군			
8	거창읍 가지리	1354-22	임	1,137	1,137	-	거창군			
9	거창읍 가지리	산103-1	임	992	992	-	거창군			
10	거창읍 가지리	1343-2	전	248	248	-	거창군			
11	거창읍 가지리	1345-56	전	50	50	-	거창군			
12	거창읍 가지리	1345-3	전	351	351	-	거창군			
13	거창읍 가지리	1297-15	임	164	164	-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1343-13	전	3,055	3,055	-	거창군			
15	거창읍 가지리	1323-59	전	266	266	-	거창군			
16	거창읍 가지리	산104-1	임	1,006	600	-	거창군			
17	거창읍 가지리	1336-9	전	347	340	-	거창군			
18-1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x1/2	-	거창군			
18-2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x1/2	-	거창군			
19-1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x1/2	-	거창군			
19-2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x1/2	-	거창군			
20	거창읍 가지리	산104-13	임	1,035	1,035	-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면 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합계	-	-	-	20,696	20,271	-	-	-	-	-
소계	-	-	-	9,297	9285	-	-	-	-	-
21	거창읍 가지리	1343-9	전	114	114	-	거창군			
22	거창읍 가지리	1336-8	전	532	520	-	거창군			
23	거창읍 가지리	1343-3	전	344	344	-	거창군			
24	거창읍 가지리	1343	전	565	565	-	거창군			
25	거창읍 가지리	1343-8	전	238	238	-	거창군			
26	거창읍 가지리	1343-10	전	1,363	1,363	-	거창군			
27	거창읍 가지리	산102-2	임	595	595	-	거창군			
28	거창읍 가지리	1342-1	과	1,022	1,022	-	거창군			
29	거창읍 가지리	산102-7	임	623	623	-	거창군			
30	거창읍 가지리	1343-11	전	268	268	-	거창군			
31	거창읍 가지리	산102-8	임	26	26	-	거창군			
32	거창읍 상림리	410-13	전	1,242	1,242	-	거창군			
33	거창읍 상림리	410-16	전	1,790	1,790	-	거창군			
34	거창읍 상림리	410-14	전	470	470	-	거창군			
35	거창읍 상림리	753-1	도	15	15	-	거창군			
36	거창읍 상림리	410-9	전	50	50	-	거창군			
37	거창읍 상림리	410-17	전	40	40	-	거창군			

○ 공공청사(거창지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	8,782	8,782	-	-	-	-	-
소계	-	-	-	8,782	8,782	-	-	-	-	-
1	거창읍 가지리	1354-27	임	3	3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54-1	임	449	449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45-14	전	193	193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13	전	167	167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45-57	전	32	32	-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1345-43	전	46	46	-	거창군			
7	거창읍 가지리	1345-49	전	10	10	-	거창군			
8	거창읍 가지리	1345-44	전	848	848	-	거창군			
9	거창읍 가지리	1354-26	임	21	21	-	거창군			
10	거창읍 가지리	1354-23	임	3,447	3,447	-	거창군			
11	거창읍 가지리	1354-24	임	8	8	-	거창군			
12	거창읍 가지리	1345-45	전	3,092	3,092	-	거창군			
13	거창읍 가지리	1345-58	전	60	60	-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1345-22	전	55	55	-	거창군			
15	거창읍 가지리	1345-23	전	75	75	-	거창군			
16	거창읍 가지리	1345-59	전	25	25	-	거창군			
17	거창읍 가지리	1354-17	임	85	85	-	거창군			
18	거창읍 가지리	1354-21	임	11	11	-	거창군			
19	거창읍 가지리	1345-48	전	1	1	-	거창군			
20	거창읍 가지리	1345-47	전	154	154	-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합계	-	-	-	20,060	20,060	-	-	-	-	-
소계	-	-	-	11,269	11,269	-	-	-	-	-
21	거창읍 가지리	1345-46	전	153	153	-	거창군			
22	거창읍 가지리	1345-50	전	28	28	-	거창군			
23	거창읍 가지리	1345-60	전	2	2	-	거창군			
24	거창읍 가지리	1345-26	전	23	23	-	거창군			
25	거창읍 가지리	1345-25	전	55	55	-	거창군			
26	거창읍 가지리	1345-24	전	114	114	-	거창군			
27	거창읍 가지리	1354-29	임	55	55	-	거창군			
28	거창읍 상림리	410-4	전	169	169	-	거창군			
29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	거창군			
30	거창읍 상림리	410-19	전	107	107	-	거창군			
31	거창읍 상림리	410-8	전	261	261	-	거창군			
32	거창읍 상림리	410-22	전	632	632	-	거창군			
33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	거창군			
34-1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x1/2	-	거창군			
34-1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	“	-	거창군			
35	거창읍 상림리	412-16	전	1,250	1,250	-	거창군			
36	거창읍 상림리	산21-10	임	365	365	-	거창군			
37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29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이원종무			
38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99	9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이원종무			
39	거창읍 상림리	산21-9	임	1,193	1,193	-	거창군			
40	거창읍 상림리	412-13	전	516	516	-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합계	-	-	-	22,593	22,593	-	-	-	-	-
소계	-	-	-	2,542	2,542	-	-	-	-	-
41	거창읍 상림리	412-12	전	4	4	-	거창군			
42	거창읍 상림리	산21-11	임	1,307	1,307	-	거창군			
43	거창읍 상림리	412-14	전	116	116	-	거창군			
44	거창읍 상림리	산25-10	임	48	48	-	거창군			
45	거창읍 상림리	산25-11	임	878	878	-	거창군			
46	거창읍 상림리	703-10	전	33	33	-	거창군			
47	거창읍 상림리	702-7	전	151	151	-	거창군			
48	거창읍 상림리	702-8	전	5	5	-	거창군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고시 제2024-16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6일

거창군수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4	주차장	위천면 황산리 835-2번지 일원	-	증)3,675	3,675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4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신설 위치 : 위천면 황산리 835-2번지 일원 면적 : 3,675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승대 출렁다리 일원 주차장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주차장을 신설함.

2. 관계 도면 : 실음생략

3.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가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가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가북면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955번지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군특 2,798, 도비 359, 군비 840, 자부담 3)
5. 사업기간 : 2020 ~ 2025년 (6년간)
6. 사업내용 : 세부사업 총괄표 참고
 - (H/W) 한마음 주민행복센터 리모델링(3층) 연면적 A=863.23㎡
한마음 체육관 조성(1층) 연면적 A=540.0㎡
상가간판 정비 10개소
 - (S/W) 문화복지프로그램, 동아리 양성 및 행사지원, 맞춤형 교육 등
7.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8. 기 타 사 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055-940-8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업 총괄표

구 분	기본계획	
	주요공종	사업비 (백만원)
-	합 계	4,000 <1,657>
기초생활 기반확충	한마음 주민행복센터 조성 (폐교 리모델링) - 3층 연면적 A=1,158.3㎡	1,639
	한마음 체육관 조성 - 1층 연면적 A=540.0㎡	1,872
지역경관 개 선	상가간판 정비 10개소 (자부담 3백만원 포함)	21
역량강화	문화복지프로그램	55
	동아리양성 및 행사지원	142
	맞춤형교육	61
부대비용	기본계획비, 시행계획비, 토지매입비, 사업관리비 등	210
군비 추가	- 부지 및 건물 보상비 - 주민행복센터, 체육관 공사비 추가 반영	<1,657>

⇒

시행계획	
주요공종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000 <2,103>
한마음 주민행복센터 조성 (폐교 리모델링) - 3층 연면적 A=863.23㎡	1,639
한마음 체육관 조성 - 1층 연면적 A=540.0㎡	1,872
상가간판 정비 10개소 (자부담 3백만원 포함)	21
문화복지프로그램	55
동아리양성 및 행사지원	142
맞춤형교육	61
기본계획비, 시행계획비, 토지매입비, 사업관리비 등	210
- 부지 및 건물 보상비 - 주민행복센터, 체육관 공사비 추가 반영	<2,103>

※ < > : 외서는 군비 추가 투입

거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7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 사업의 목적 : 모둠과 학습, 공유와 나눔으로 만드는 “신활력 거창”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4. 사업비 : 7,000백만원(균특 4,900, 도비 630, 군비 1,470)
5. 사업기간 : 2020 ~ 2024년 (5년간)
6. 사업내용 : 세부사업 총괄표 참고
 - (H/W) 신활력 공유센터 신축(1층) 연면적 A=459㎡
공유 가공공장 신축(1층) 연면적 A=1,178㎡
 - (S/W) 신활력 아카데미, 특화가공상품개발, 들밥식당 등
7.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
8.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S/W담당)(☎940-8283), 농촌개발담당(H/W담당)(☎940-8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편입 면적 -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 없음

사업명	지번	지목	소유자	지역·지구 등	면적(㎡)			비고
					전체	편입	매수	
신활력 공 유 센 터 조 성	대평리 1342-1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536	536	536	
	대평리 1342-2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299	299	299	
	대평리 1343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279	279	279	
	대평리 1344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77	177	177	
	대평리 1335-4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825	825	825	
	대평리 1335-5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084	1,084	1,084	
	대평리 1335-6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024	1,024	1,024	
	대평리 1336-2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916	916	916	
	대평리 981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316	1,316	1,316	
	대평리 1322-4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209	1,209	1,209	
	대평리 1323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100	1,100	1,100	
	대평리 1324-3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747	747	747	
	대평리 981-4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31	131	131	
	대평리 1322-6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77	77	77	
	대평리 1323-2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17	17	17	
	대평리 1342-10	답	국	일반공업지역	135	135	135	
	대평리 1335-8	답	국	일반공업지역	206	206	206	
	대평리 1323-1	답	국	일반공업지역	200	200	200	
	대평리 543-18	답	국	일반공업지역	138	138	138	
	대평리 543-16	구거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200	200	200	
	대평리 1318-2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87	87	87	
	대평리 981-1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28	28	28	
	대평리 1336-6	답	거창군	일반공업지역	30	30	30	
	대평리 1323-3	답	국	일반공업지역	12	12	12	
소 계					10,773	10,773	10,77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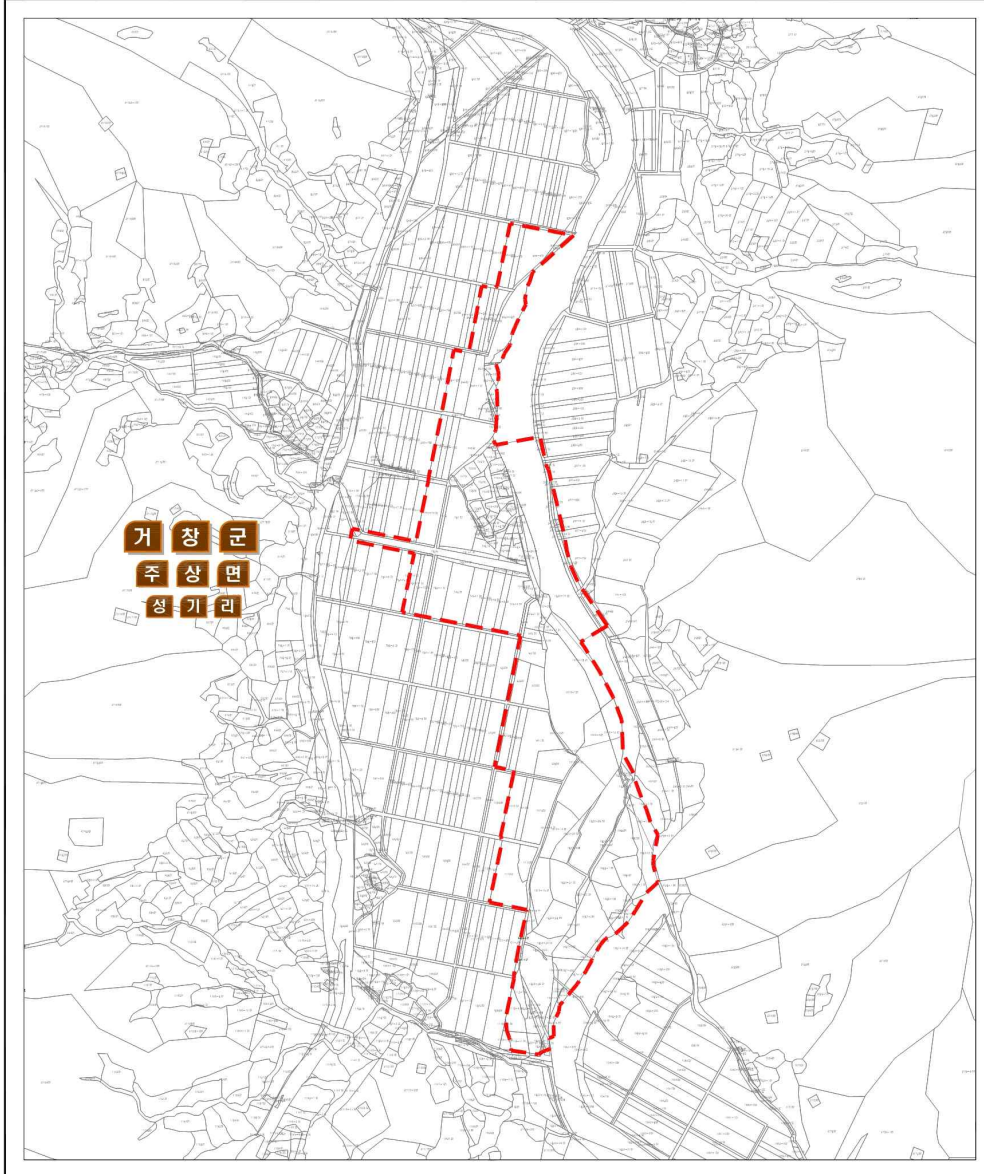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미기들 지구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일원	침수 위험	나	209,306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가 불량하고, 하폭 및 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제내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발생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붙 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2024년 02 월 06 일

거 창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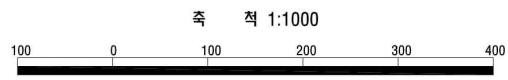
미기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지형도면



- ▣ 행정구역 : 거창군
- ▣ 지정권자 : 거창군수
-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거창군수

- 범례**
- 지적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 명칭 : 미기들지구
- ▣ 유형 : 침수위험지구
- ▣ 등급 : 나등급
- ▣ 면적 : 209,306㎡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우랑길 796-40 등 4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차액 지원, 지원 및 제외 대상, 신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정함(안 제7조~제16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2. 6. ~ 2022. 2. 14.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과
라. 전화 055-940-8262, 팩스 055-940-8179

붙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벼일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찰벼일 경우에는 농협자체 수매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액 지원)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차액 지원 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게을리하여 농산물 생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차액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
2. 기준가격 결정
3.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농업관련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중 7명 이내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준가격 결정 및 차액 지원 계획 시 그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둬야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기준가격 보장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34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거창군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환경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1명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자료 조사 - 마을 공동물품 자료 조사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다. 응시연령 : 원서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라. 거주지 :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마.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바. 한글, 엑셀 등 컴퓨터 이용 가능한 자 우대
- 사. 가점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둘 이상의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개의 가점만 적용함

3. 근무조건

-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나. 채용기간 : 2024. 3월 ~ 8월(6개월 정도)
 - ※ 채용 후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다. 보 수 : 시급 9,860원(주휴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등)
- 라. 근무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마. 근무지 : 거창군청 환경과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 1)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등 응시 적격 여부 확인
-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자기소개서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1) 모집공고 : 2024. 2. 1. ~ 2024. 2. 9.

2) 원서접수 : 2024. 2. 14. ~ 2024. 2. 16.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 4층 환경과 (평일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 2024. 2. 19. ~ 2024. 2. 20.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4. 2. 22.

1)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부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응시표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6.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 근무개시(예정)일 : 2024. 3. 4. 예정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부착)
- 나. 이력서 1부.
- 다. 자기소개서 1부.
- 라. 주민등록 등본 1부.
- 마.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바.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 사.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차. 자격검증 동의서 1부.
- 카.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 타.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14일 이내 청구할 경우 반환하여 드리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사.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수질관리담당(☎940-3512)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부서	환경과			
분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서식2]	
2	이력서 ▷ [서식3]	
3	자기소개서 ▷ [서식4]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6	재산세 과세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식6]	
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7]	
10	자격검증 동의서 ▷ [서식8]	
11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응시분야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 ②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③ 자격·면허 : 운전면허 등 기타 자격증 기재
- ④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서식3]

이 력 서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부서 분야	환경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성 명	
----------	--	----------	----------	------------------------------------	-----	--

학 력

전공학과(인문, 자연 계열 등)	학위취득일 (학교 졸업일)	학위명	비 고

경 력

근무처(직장명)	근무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		
	~		
	~		
	~		
	~		

수상내역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수상경위

기술 및 자격증(자격사항)

자격종목(명)	자격증 번호	취득일(시행일)	교부기관	비고(점수)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삭제 가능

[서식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를 위한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직권 용도폐지 검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32조의3에 의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주민 등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거 창 군 수

1. 용도폐지 검토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비 고
북상면 병곡리 741번지	구거	1,029㎡	78㎡	농림수산부 소유
북상면 병곡리 775번지	도로	610㎡	131㎡	농림수산부 소유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 램 장 소	열 램 기 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2024. 2. 1. ~ 2024. 2. 14.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2. 1. ~ 2024. 2. 14.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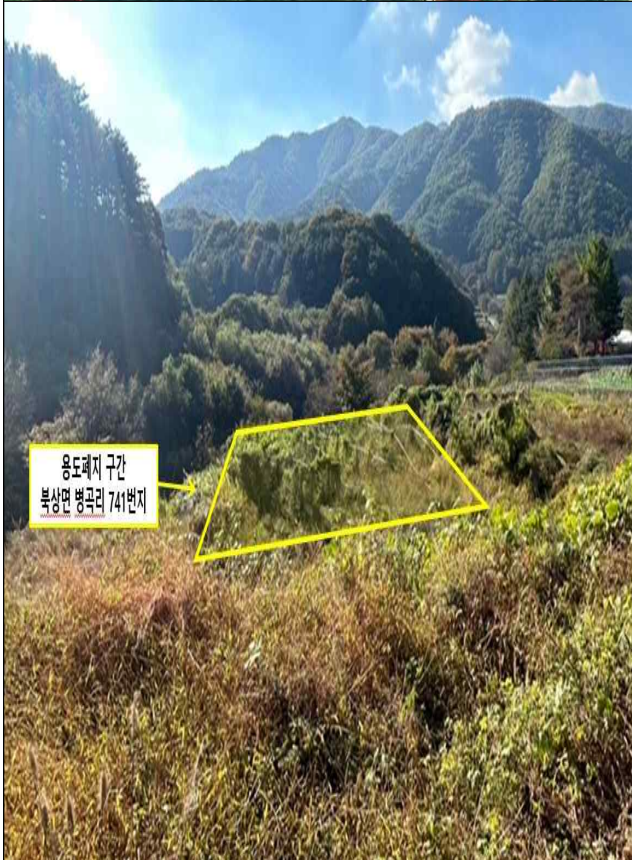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12.31.일까지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통일)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2)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안 제10조)

-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 300원 → 50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 600원 → 1,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마.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 전자우편 : ekpark9216@korea.kr
- 팩스 : 055-940-8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부과담당(전화 055-940-32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일자	2024. 2. .
제 출 자	재무과장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12.31.일까지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통일)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2)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안 제10조)

-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 300원 → 50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 600원 → 1,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2. . ~ . .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제1호 중 “300원”을 “500원”로 하고, 제2호 중 “6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1.~2. (생략) ②~④ (생략)</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1.~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

1.~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
지서 1장당 600원

② (생략)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
지서 1장당 1,000원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4차 공고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거창군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인구교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명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 관내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업무 · 기타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업무

2. 응시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채용분야	자격요건
청소년 동반자	· 채용 확정 시 거창군 내 거주가 가능한 자 *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건임
	· 관련 자격증 * 1개 이상 소지한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 1년 이상인 자

1) 관련자격증 및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p>▶ 1개 이상 소지자</p>	<p>▶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p>

나. 공통사항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라.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기타 채용조건

- 1)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일제 직업 소지자는 신청 불가
- 2)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불인정

바. 가점 대상자

- 1) 법정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2)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사. 근거법령 및 기준

- 1)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3)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4)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등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보 수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청소년동반자 보수)에 의함

※ 연 33,300천원 내외(기본급, 사례진행비, 자격수당, 연차수당 등)

다. 근로기간 : 2024. 3. 4. ~ 2024. 12. 31.(10개월)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전일제)

※ 운영 상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마.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바. 근무내용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업무 등

- 1)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매뉴얼’ 을 사전 열람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 > 전자도서관 > 정보검색 > 본원간행물(PDF) 검색메뉴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개정3판)” 의 내용 확인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등 응시 적격 여부
- 2) 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①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 면접위원 3명 예정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모집공고 : 2024. 2. 7.(수) ~ 2. 20.(화) / 14일간
- 2) 원서접수 : 2024. 2. 7.(수) ~ 2. 20.(화) / 14일간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담당(평일 근무시간 내)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발표 : 2024. 2. 26.(월) / 개별통보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4. 2. 28.(수)

-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부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9.(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1) 근무개시(예정)일 : 2024. 3. 4.(월)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서식1) 1부
- 나. 자기소개서(서식2)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1부
- 라.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바. 자격검증 동의서(서식4) 1부
-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5) 1부
- 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바. 채용서류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팩스(☎055-940-8709)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합격자 제외),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비용은 구직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사. 채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응시분야** :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 ②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 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④ **자격·면허** : 운전면허는 기재하지 않음
- ⑤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 ⑥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주요경력 등
-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23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청소년상담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거창군 아동보호전문요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